

지적재산권으로의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 현황

Present State of Classic Music's Copyrights in Korea as an Intellectual Property

정지영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Jiyoung Jung(jj0842@hansei.ac.kr)

요약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클래식음악 | 저작권 | 지적재산 |

Abstract

Although there are highly artistic music pieces which have composed and presented every years at concerts in Korea nowadays the their copyrights are not claimed.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lassical music are employed as educational and nonprofit purpose. Recently, the copyright claim is the trend for all kinds creations therefore one who produce creative works desire more the hearty and creative. However, in the field of classical music in Korea, the r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are low compared to popular music when this paper research the presents st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through the Korea music copyrights association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refore, people who in the field of classic music should be encourag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such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s actively.

■ keyword : | Classic Music | Copyrights | Intellectual Property |

I. 서론

2010년에 음악계와 영화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해 갈등이 생겨났고 결국 두 업계 간의 소송전이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극장들을 상대로 영화관에서 협회에 등록된 노래가 삽입된 영화가 상영될 경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21005-009

접수일자 : 2012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17일

교신저자 : 정지영, e-mail : jj0842@hansei.ac.kr

우 저작권료로 극장매출의 1%를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9조 1항에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 하에 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음악의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실연자 등에 대한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분쟁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 왔는데 영화관이나 마트 같은 장소에서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적거나 아예 없는 오래된 클래식 음반을 틀어주어 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클래식음악을 틀어 주는 이마트 앞에서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원들이 대중문화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1]. 이 소송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이 영화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 해결의 국면을 맞이했다[2].

오늘날 클래식음악분야는 대중음악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사실상 저작권의 보호에서 많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클래식음악 분야가 전통적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특징과 시대적 유행이나 사회적 흐름에 빠르게 같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순수음악으로써 클래식음악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클래식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법적권리에 대한 인식과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적재산으로의 저작권

1.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저작권의 대두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지적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중심축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기반산업으로 급속한 이동과 함께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3].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적 콘

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GDP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다[4].

지식기반 경제구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쟁점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저작권의 최초의 개념은 1710년 영국에서 작가와 출판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앤 여왕법(Act of Queen Ann)을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5]. 이후 미국에서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1886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체결되어 1878년 55개국이 조약을 맺었다.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였고 위조상품의 교역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진국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확립되었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해상의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6].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는 창조적인 지식에 대한 생산과 분배 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이 현 시대에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저작권법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22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제 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 22조는 지적재산

권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그리고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7].

한국의 저작권법은 1908년 일본정부에 의해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을 통해서 저작권법이 공포되었고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후 일제시대에는 1910년부터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데 관한 건’(칙령 338호)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후 1957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의 1877년 저작권법을 기초한 것이고 이후 1986년 전면적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을 하며 적용되어 오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신탁과 대리중개의 방식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그 사용료를 매번 협의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권리자들의 위탁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또 이용자들은 역시 창작물에 대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관리단체가 개개인의 저작권자가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창작자들의 권익을 조직적으로 보호 및 유지할 수 있다.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법’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개정을 거쳐 저작권법 제 105조 제 1항과 제 2항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 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제 108조에 따라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제 106조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1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문예, 학술저작권 관리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맡고 있다. 영상, 시나리오 저작권은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그리고 영화저작권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방송작가의 저작권은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해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신탁을 받아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다[9].

III. 한국의 음악저작권 현황

1. 음악저작권 관리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에 대한 정보와 권리의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및 열람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DB제작자 권리 등과 그 권리의 변동까지 등록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10]. 한국 저작권위원회에는 매년 음악제작물, 방송, 실연, 음반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등록받고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을 통해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의 연장, 침해물

품 통관 서류 신고 자격 취득 등의 효력을 가진다. 추정력은 제작권법 제 53조에 저작자로 실명이나 공표 당시 사용한 이명과 국적, 주소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 125조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권리변동 등 등록의 경우에는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며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등록과 권리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1]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된 전체 저작물과 음악저작물로 저작권이 등록된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로 나누어서 등록을 받고 있다. 2006년 전체 저작권 등록 수는 12101건으로 2007년에는 15293건으로 더 많은 등록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 10890건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3549건, 14009건으로 등록현황을 기록하여 평균 13000건 내외가 매해 저작권등록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음악제작물의 등록 건수를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해마다 등록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등록건수는 각각 362건과 659건으로 두 배 이상의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387건, 2011년에는 1261건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등록 건수의 상승은 창작

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작자 당사자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관리위원회에 나타난 저작권 등록 현황에서 1997년까지 음악제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한 건도 없었으며 1998년 찬송가 19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음악제작물의 저작권이 등록되었다. 2012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음악제작물 등록건수는 1044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1. 2006년~2011년 음악제작물 저작권등록현황

| 년도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
| 전체제작물 | 14009 | 13549 | 10890 | 12374 | 15293 | 12101 |
| 음악제작물 | 1261 | 1387 | 985 | 744 | 659 | 362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편집, 단위:건)

[표 2]는 2012년 상반기에 저작권 등록을 한 음악제작물의 장르를 분류한 것이다. 우선 대다수의 작품들이 대중가요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게임음악이나 광고음악 그리고 교육용 자료에 쓰이는 음악들의 저작권등록이 더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음악제작물 저작권 등록건수의 내용을 보면 음악의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도 클래식음악에 대한 등록건수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 부분의 2012년도 창작물에 대한 등록 건수는 순수음악 분야에서의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12년 상반기 음악제작물 저작권 등록 장르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게임음악& 광고 | 1 | 3 | 0 | 1 | 71 | 1 |
| 대중가요(회사등록) | 0 | 29 | 1 | 0 | 0 | 0 |
| 대중가요(개인등록) | 80 | 96 | 88 | 61 | 73 | 61 |
| 교육용자료 | 0 | 46 | 0 | 0 | 0 | 0 |
| 종교(개인 및 단체) | 6 | 2 | 13 | 2 | 7 | 42 |
| 클래식음악 | 0 | 0 | 0 | | 0 | 0 |
| 기타 | 9 | 2 | 3 | 7 | 0 | 0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편집, 단위:건)

이렇게 클래식 음악분에서 저작권의 등록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창작과 연주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재와 사실상 그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이 깊은 음악분인 순수 클래식 음악에서 창작분야를 보면 해마다 많은 작품들이 작곡 및 발표가 되고 있다. 가령 1978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산하에는 2012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1개의 작곡동인단체들이 가입되어 약 1200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매년 1회 이상 창작작품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여 한 해 평균 50여 회에 이르는 음악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1]. 즉 매년 수 많은 현대 창작작품들이 신작으로 발표되어지는데 우수한 예술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발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 창작작품들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연주회로 발표되어지는 한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매년 창작되어지는 작품들은 그 저작권의 등록 및 공연권까지 법적인 보호아래 있지 못하고 있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 3월 창립되었다. 당시는 저작권의 정확한 개념조차 이해되지 못하고 있던 음악적 풍토 하에서 순수음악, 동요, 국악, 가요 등의 부분으로 결성되었다. 당시에 설립을 주도하였던 인사들로 손목인(孫牧人, 1913-1999), 박시춘(朴是春, 1913-1996), 반야월(半夜月, 1916-) 김희조(金熙祚, 1920-2007) 등이 있었고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저작권사용료부과규정 등을 통과시키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필하였다. 당시 음악저작권협회가 탄생되게 된 것은 연예협회 산하에 창작분과가 흡수되어 있어 독자적인 저작권 주장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2년부터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에 의거한 저작권 관리기구로서의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88년 2월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하였고 당시 전국 16개 지부운동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5년 4월에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정회원으로 승격하였고 1996년 9월에는 BIEM (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하여 국제적이면서도 공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동요, 국악, 대중음악, 종교 등의 분야들이 나누어 창작물에 한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규 저작권 시장 개척과 사용료 인상을 통한 저작권 징수 극대화 추구하고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협회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저작물의 등록과 신탁관리업무의 개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국내 등록작품은 351,225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가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12].

[표 3]은 2012년 9월까지 등록된 저작물의 수량이다. 평균 매달 3000건 내외의 저작물들이 등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월별 등록작품 중 순수음악분야 즉 클래식음악을 포함한 분야와 국악분야의 등록 수는 대중음악분야와 동요 및 종교음악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국내 2012년 월별 음악저작권 등록작품 수

| 월별 (2012년) | 대중음악 | 순수음악 | 국악 | 동요 | 종교 |
|------------|------|------|----|-----|-----|
| 1월 | 2125 | 54 | 16 | 87 | 68 |
| 2월 | 2082 | 54 | 24 | 103 | 49 |
| 3월 | 2200 | 162 | 13 | 15 | 61 |
| 4월 | 2182 | 50 | 19 | 174 | 87 |
| 5월 | 2369 | 134 | 18 | 38 | 112 |
| 6월 | 1563 | 73 | 32 | 231 | 115 |
| 7월 | 1564 | 36 | 12 | 19 | 92 |
| 8월 | 1174 | 39 | 4 | 35 | 53 |
| 9월 | 1125 | 47 | 27 | 44 | 52 |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편집, 단위:건)

등록 작품 수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순수음악 분야로 등록된 작품들 중에서 실질적인 전통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더 열악하고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2012년 8월의 순수음악 분야 등록현황이다. 총 39건의 등록 작품 수에서 현재 클래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의 작품 수는 19곡이며 기존의 대중음악 가수나 작곡가들에 의한 작품들

은 4곡, 뉴에이지 장르의 작품은 3곡이었다. 기존의 클래식음악의 작곡가 작품으로 연주자의 공연권이 저작권으로 등록된 경우가 13곡으로 클래식음악의 저작권 등록은 실질적으로 27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중음악 1174건에 비해 아주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표 4. 국내 2012년 8월 순수음악분야 현황

| 창작음악 | 기존 클래식 음악 | 뉴에이지 | 대중적 경향 |
|------|-----------|------|--------|
| 19 | 13 | 4 | 3 |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편집, 단위:건)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주장과 법적인 보호망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 속에서도 유독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음악이나 미술의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 스스로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순수예술에 있어서 스스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작인 스스로도 저작권 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과 같은 예술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클래식 음악분야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자신의 작품의 연주나 발표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묵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음악의 창작물은 주로 지적재산으로 보기 보다는 지나치게 예술의 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는 풍토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조항에서도 나타나는데 제 23조 이하를 보면 재판상의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및 방송에 사용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13]. 물론 음악적 특수성과 예술적 기능에 의해 많은 부분 음악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특성과 공공의 특성이 창작물에 대한 법적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음악에 있어서 저작권법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근거한 조항들은 모든 음악분야에 적용되어

창작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에 대한 제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신탁의 형태로 집중관리제도와 대리중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대부분의 분야가 대중음악분야가 강한 것이 현실이다. 클래식 음악분야에서 저작권관리는 여러 제도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등록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클래식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창작자와 연주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음악에 저작물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때때로 교육적 차원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저작권조차 등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관리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 창작물과 공연 및 음반의 건수는 대중음악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법률적 지식과 권리행사의 지침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적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23일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으로 70년 보호기간 연장과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되었다. 개정 저작권 법률안 바로 시행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안은 법 개정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와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여 사후 70년으로 보호기

간을 두고 있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창작의욕 고취로 인한 저작물의 생산이 촉진되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보호기간의 연장은 클래식 음악분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주음반이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면 클래식음악분야에서도 저작권을 더 적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나 음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법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음악에 비해 산업적 규모가 적고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가 미비한 것이 현 상황이지만 순수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이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주장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또한 클래식음악분야의 저작권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와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주장과 적절한 금전적 댓가를 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클래식음악 분야가 오늘날 일부 연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사자들이 교육계에 동시에 몸담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 예술활동에 대한 보상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산업적 측면이 강하고 규모면에서도 매년 급성장을 하는 대중음악은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민감하게 적용되며 관련된 모든 조직이 그 사용료 징수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학술적 측면이 강하고 순수 예술이라는 클래식음악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작권 징수에 소극적이며 조직적 측면에서도 약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클래식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과 그 법적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중음악분야와 달리 저작권 등록에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적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음악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른 대리중개의 형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동향 등이 순수음악적 측면에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클래식음악분야에서는 저작권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작품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클래식음악에 있어서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작권 관리에 대한 현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관리의 효용성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기관이나 법적 체계 등에 대한 실태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실질적인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클래식 음악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매체의 변화 속에서 저작물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법률적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김진우, 김하늬, “음악-영화계 ‘저작권’ 갈등, 결국 소송전 비화”, 머니 투데이, 2012. 1. 12.
- [2] 임병선,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합의”, 문화저널 21, 2012. 9. 5.
- [3] 김선재, “지식기반경제와 국민지적자본의 효용성: 한, 미, 일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 pp.158-161, 2008.
- [4] 이해경, 김희완,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에 관하여 사용자 의식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213, 2009.
- [5] 우지숙, “저자는 어디에 있는가? 국내 학술논문의 저작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사회, 제16권, 제3호, pp.95-96, 2008.

- [6] 임순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문화무역연구, 창간호, pp.263-272, 2001.
- [7] 육소영,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pp.231-254, 2011.
- [8] 김종보, “지적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통권 54호, p.7, 2005.
- [9] 조채영,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경쟁적 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2호, pp.157-159, 2011.
- [10] http://www.komca.or.kr/int/int_contents_02_02.jsp
- [11] <http://www.composers.or.kr/index.php>
- [12]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13] 박원호, “한국음악저작권의 현상”, 지적소유권법 연구, 창간호, pp.403-444, 1991.

저 자 소 개

정 지 영(Jiyoung Jung)

정회원



- 1993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학사)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석사)
 - 1998년 9월 : New York University, 음악과 작곡전공(석사)
 - 2002년 6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음악과 작곡전공(박사)
 - 2002년 9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음악과 음악이론전공(석사)
 - 2007년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현대음악, 작곡, 지적재산권, 저작권